

2023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추가 공고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을 추가 안내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8.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I. 사업 근거 및 사업개요

□ 사업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제2항

□ 사업개요

- 모집분야 : 고용모델 개발을 통한 중증장애인 직무개발 및 확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11월 30일
- 사업예산 : 인센티브 포함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비는 신청기관 여건에 맞게 자율편성 가능(사업목적과 무관한 비용 지원 불가)
- 사업계획 타당성에 따라 일부 지원예산이 조정되어 결정될 수 있음
- 최초 약정 체결 후 사업비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선정규모 : 추가 수행기관 1개소 선정

* 사업운영 타당성·안정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 평가

** 신청기관이 선정규모의 2배수 미만일 경우 적부 심사 (기준: 60점) 후 선정 가능

- 사업방식 : 고용모델 개발·확산 참여 수행기관 공모·선정 및 사업비 지원 사업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Ⅱ. 모집 분야 및 지원 자격

□ 모집 분야

공모내용	모집분야
고용모델 개발 및 확산	기존 직무 개발사례와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고용모델 개발과제 및 확산 방안(불임 2, 3 참조)

□ 지원 자격

-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 우대사항

- 기업체 등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직무개발 및 확산계획 수립 여부
- 4차산업(빅데이터, AI 등) 관련 직무, ESG(친환경, 탄소저감 등) 관련 직무 개발 계획 수립 여부

□ 제외대상

- 해당연도에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에 참여해 중단 또는 포기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취업 등 성과가 미진한 경우

Ⅲ. 신청 일정 및 향후 일정

□ 신청 일정

- (신청기간) 2023.8.7.(월) ~ 8.14.(월) 13:00
- (신청서류) 사업 운영 신청 관련 서류 일체
 - ① [붙임1]의 사업수행 계획서
 -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신청방법) 이메일 및 우편 동시 접수
 - ① 우편(등기)으로 신청서류 공단 송부

② 담당자에게 이메일(leadonghk@kead.or.kr)로 신청서류 제출

* 접수누락 방지를 위하여 등기접수 후 담당자 이메일로 반드시 동시 접수

** 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반드시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확산 사업 신청" 표기, 신청서는 마감일 13:00 도착분까지만 유효

- (제출처)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6층)

□ **향후 일정**

- (선정 결과발표) 2023. 8. 24.(목) 예정

* 공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약정체결 및 사업 안내) 2023.8월말

- (사업운영) 약정체결일 ~ 2023.11.30.

IV. 수행기관의 역할

- (참여대상자 모집) 개발 예정 고용모델 직무 수행이 가능한 참여대상자 모집
- (프로그램장소 제공)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프로그램(현장실습 포함) 장소 제공
- (강사진 구성·운영) 고용모델에 적합한 커리큘럼·강사진 구성
- (참여대상자 관리) 출석 체크,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지역기반 네트워크 구성·운영) 지역 기반의 기업과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연계 방안 마련
-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만족도(취업시 취업만족도 포함 등)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 제출 (~사업 종료 시 까지)
- (모니터링 협조) 공단의 사업 점검 요구 시 관련 자료 제출
- (사후관리 실시) 수료 후 취업연계, 미취업자 지원 방안 수립 등 실시

- (직무기술서 제출) 2023.10.30.(월)까지
- (결과보고서 제출) 2023. 12. 6.(수)까지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 사업추진 결과 및 사업비 정산내역, 관련 문서, 회계서류 별첨
- (사업평가 성과공유회) 수행기관별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주요 성과공유회 참석(12월초)
 - * 구체적인 사업평가, 성과공유회 운영 계획은 별도 수립 후 공지 예정
-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집행 잔액과 사업비 이자 반납
 - * 사업비는 참여 장애인 경비(교통비, 식비 등 실비)와 사업체보조금, 기관 운영비 등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편성 가능, 사업계획 타당성에 따라 일부 조정·결정
- (고용모델 확산) 개발한 고용모델의 현장 적용 및 기업체 확산을 위한 홍보, 취업처 알선 및 탐색 등 업무 실시
- (기타 지원) 수행기관 간담회 참여, 관계자 현장 방문 시 응대, 안전관리, 안전 교육 민원 관리, 심리 관리 등 기타 지원

사업 주요 일정		비고
항목	기한	
사업 수행	약정체결일~ 11.30.까지	
직무기술서 제출	10.30.(월)까지	공문 제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12.6(수)까지	공문 제출

V. 특전 및 기타 사항

□ 특 전

- (인센티브 지급) 사업 신청 시 수행기관에서 설정한 목표 대비 실적 초과 달성 기관에 대하여 사업비의 최대 20%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비율) 성과목표 달성 기관 중 목표 대비 100% 달성 기관은 사업비의 10%, 120% 초과 달성 기관은 사업비의 20% 지급
- (가점부여) 2023년 성과 우수기관이 2024년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 세부 가점 기준 차년도 사업 수립 시 안내

□ 성과 목표

- (성과목표 설정) 참여인원의 취업률로 참여인원 대비 최소 70% 이상으로 취업 성과목표 설정
- ※ 성과목표 달성 시 취업 증빙서류 예)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등 제출 필수

VI. 유의사항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공공채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이 부과(최대 5배) 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기관은 향후 2년간 해당 사업에 지원 불가
- 운영기관이 지도·점검 불응하거나, 사업계획과 약정서 내용 위반 또는 불이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 요구, 주의, 경고 후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하며 이는 운영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
- 사업비는 운영기관과 약정한 예산 전액 지원
 - 약정 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지급
- 2023. 12. 6.(수)까지 사업 결과보고서*(사업추진 결과 세부내용 및 사업비 정산내역 포함, 관련 문서, 회계서류 등 별첨)를 제출하며 사업종료 후 집행 잔액과 사업비 이자 반납
 - * 선정기관은 별도 사업 결과보고서 양식(공단 직업영역개발보고서 참조)을 약정체결 시 안내 예정
- 심사결과 적격 기관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 기관의 경우도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따라 지원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국 직무개발팀(이동혁 과장)
- Tel) 031-728-7177

2023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 · 확산사업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2023. 08.

본 기관(기업)은 공단 사업 운영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2023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 · 확산사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수행기관명

(인)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기관 현황	기관명	기관장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주소	연락처		
		팩스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기관유형(택1)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기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직업재활시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단체	<input type="checkbox"/>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input type="checkbox"/> 정신보건센터		
<input type="checkbox"/> 정신장애인사회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업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신청 사업	개발 고용모델명			
	참여대상(주장애유형)			
	사업 운영 지원인력(명)		지원인력의 직업	
	사업 운영기간			
	참여자 프로그램 기간		총 프로그램 시수	
	강사 확보 현황			
	소요예산			
	사업내용(60자 이내)			
	취업 성과목표	참여인원	취업률	
	* 취업성과 목표 최소 70% 이상 제시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계획서

I 기관개요

1. 일반현황

기관명		대표자	
기관유형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임직원수	명	신용평가등급	
기관주소	(우)		
총 자산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매출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주요사업	(※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확산 관련 사업 중심으로 작성)		
주요연혁	■ (0000. 00) ■ (0000. 00) ■ (0000. 00) ■ (0000. 00) ■ (0000. 00)		

2. 기관소개

◦ 기관소개 요약(기관 실적, 연혁 등 개조식 또는 서술식으로 작성)

□

○

3. 강점 및 차별성

◦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수행에서의 기관(기업) 특장점 및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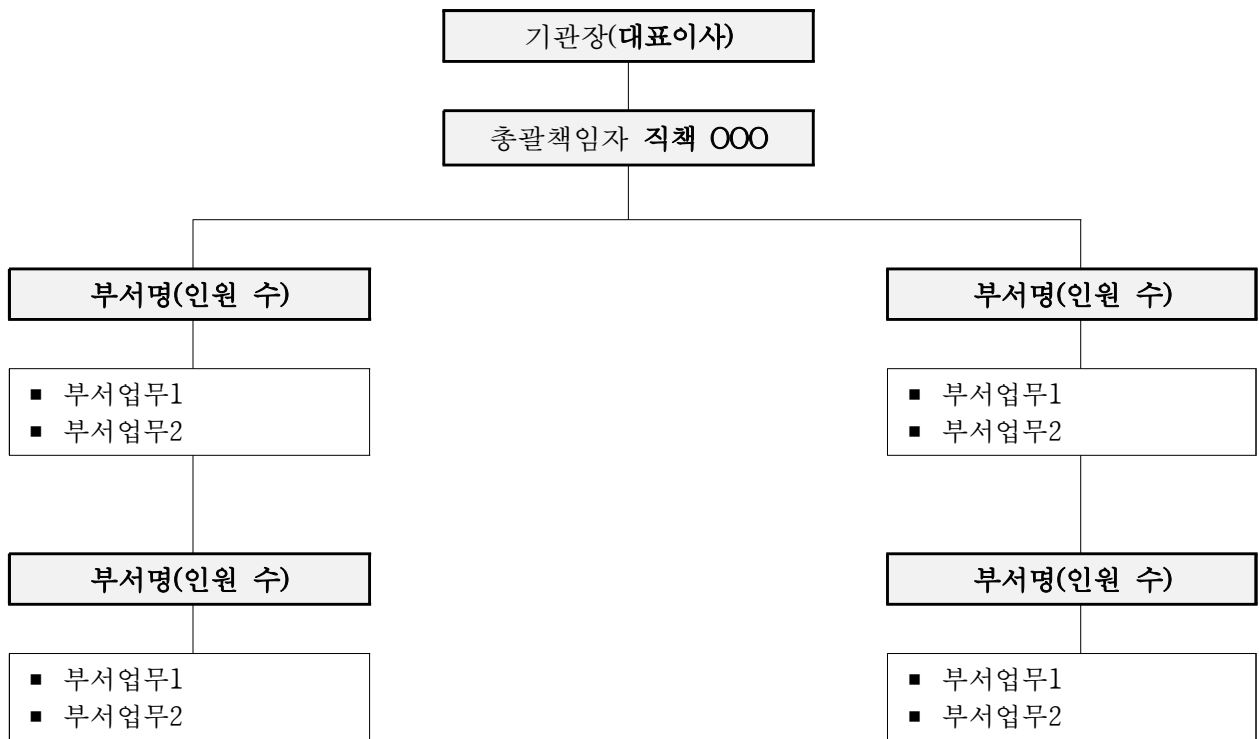
강점

○

차별성

○

4. 조직도



* 사업 참여부서는 '사업 참여부서'임을 표기, 대표자명 미기재

** 위 표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변경

5. 연간예산

◦ 기관 성격에 따라 비영리기간 또는 영리기관 양식 중 선택 기재

비영리기관

구 분		2022년(결산)	2023년(예산)
합 계			
출 연 금			
이용자부담금			
보조금	국고보조금		
	법인보조금		
	기타후원금		
차 입 금			
기 타 수 입			

영리기관

구 분	2022년(결산)	2023년 예상액
합 계		
총자산		
매출액		

II 기관사업 추진 역량

1. 수행인력(전담인력) 현황 : 총 0명

- 동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전담 인력에 대해서만 작성(사업 운영 시 반드시 투입)
- 원활한 사업 운영에 위한 필요 인력을 충분히 기재할 것(전문인력도 포함 가능)

사업 참여 인력 총괄표

순번	성 명	소 속	직급	담당업무	투입률

프로그램 강사 확보 현황 (* 강사이력서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

순번	성 명	전공	자격증	관련 경력	투입 예정시수

2. 최근 3년간 직무개발관련 사업 수행 실적

연도	수행기간	사업명	사업예산	실적		지원여부 (정부/민간)
				참여인원	취업인원	

3. 사업 추진전략

-
-
-
-

Ⅲ 세부 사업 수행계획

1. 추진목표

- 기관 여건 등을 고려해 고용모델 개발 추진배경, 사업목표, 추진방향, 직무개요 등 기술
- 목표달성을 위한 상세활동내역과 추진전략을 상세히 기재
- 성과가 측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수치) 제시

사업 목적 및 목표

- 추진 배경 및 직무개발 필요성
- 목적 및 목표

개발 고용모델 개요

- 개발 고용모델명
- 직무 수행 대상의 주 장애유형
- 직무 내용
- 기존 유사 직무와의 차이점
- 직무 확산 가능성(고용유지 가능성, 개발직무 타기업 확산 가능성)
- 중증장애인 직무 수행 가능 여부
- 직무 수행 단계별 상세 설명(필요 시 사진 첨부)

기타 사항 자유롭게 추가 작성

-

2. 추진계획

◦ 모집공고에 있는 전체 과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 방법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

홍보 및 대상자 확보 계획

◦ 장애인 참여자 확보를 위한 홍보방법, 네트워크 활용, 선발기준 등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작성

참여자 확보 및 홍보	내 용	홍보수단	비 고

고용모델 프로그램 운영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pool, 전문가 운영·관리, 사업 참여 강사 관리계획, 프로그램커리큘럼 등
◦ 교육프로그램 신청자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교육 계획
◦ 외부기관(공단, 기업체 등) 연계 계획, 장애인고용 네트워크 활용 방안 등 상세히 작성

○

○

3. 지역기반 장애인고용 네트워크 연계 계획(기관-기업네트워크중심)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계획

○

네트워크를 활용한 장애인 고용계획

○

4. 사업관리

- 개발 고용모델 교육 프로그램 수행 이상 유무 점검, 중간점검, 모니터링, 평가, 성과점검 계획 및 프로그램 품질 제고 방안

○

○

5. 취업 성과

- 사업에 따른 고용성과 목표 작성, 기관, 기업 실정에 맞게 목표 제시 (최소 70% 이상)

구분	참여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비고
취업률				목표치

6. 미취업 수료자 취업연계 방안

- (취업연계) 프로그램 종료 후 미취업 수료자 타 사업체 취업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

7. 취업자 사후관리

- (사후관리) 프로그램 수료 후 취업자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8. 기대효과

- (기대효과) 고용모델 개발, 사업 종료 후 현장적용 및 확산 계획 및 기대 효과 제시

○

IV 사업 추진일정 계획

- 세부 사업 진행 일정 외에 참여자 모집, 창업 연계 활동,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일정도 기재

일정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고 및 홍보					
참여대상자 모집					
고용모델 교육 프로그램					
세부일정 4					
세부일정 5					

* 일정 계획 시 8월까지 사업의 50% 이상을 제시, 50% 미만인 경우 심사 시 불이익

V 사업비 집행계획 총괄표

(단위 : 원)

항목	계	산출근거 (단가, 수량)
계		
강사료		
홍보 비용		

VI 청렴 및 반부패행위 실행계획

- (비계량)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수행 시 청렴성을 위한 비계량 성과관리 방법 제시
- (반부패) 사업비 집행을 포함한 반부패행위 실행계획의 구체적 방안 작성

○

○

붙임 2

연도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 · 확산사업 추진현황

연도	고용모델	장애 유형
2022년	다회용기 세척 및 대여업	중증
	전시공간 오디오 도슨트	시각
	행사장 조성 및 관리요원	발달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발달
	중고 의류 재가공 리세일	발달, 정신
	아티스트 양성	발달, 정신
	치유농업사	정신
	친환경 양봉사 양성	정신
	데이터매니저	발달
	헤어미용사	청각
2021년	이러닝 콘텐츠 검수원	뇌병변, 안면, 지체
	정리 수납 활동가	발달
	반려견 유치원 운영 및 수제 간식 제조	발달, 정신
	화가 및 작품 임대	발달
	드론방제사	척수, 지체(하지)
	소독전문가	정신
	티마스터	발달
	식물관리사	발달
	보조기기 클린마스터	발달
	읽기 쉬운 자료, 검증가	뇌병변, 발달
2020년	타로 심리상담사	시각
	산업재해 예방안마사	시각
	무용예술가	발달
	반려동물 사료제조원	발달
	병동보조원	발달
	동료상담가	정신
	마음보듬사	시각
	외식서비스원	발달

연도	고용모델	장애 유형
2019년	오피스 카페 관리사	정신
	플라워 셀러	정신
	고요한 택시운전원	청각
	클린 마스터	발달
	시니어 안전안마사	시각
	산림지원가	발달
	동료지원가	정신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강사	뇌병변 등
	플라워 티마스터	여성
	공공부문 환경미화원	중증 등
2018년	산후 안마전문가	시각
	산림지원가	발달
	에어컨 청소전문가	발달
	펫(Dog)시터	정신
	SW 테스터	청각
	환자 룸 매니저	발달 등
	생활체육보조코치	발달 등
	온라인 패커	발달
	네일 아티스트	여성
	동료지원가	정신
	공공건물 환경미화	중증, 장년
2017년	반려동물관리사	정신
	힐링체험 매니저	지적
	디자인아트	지적
	플로리스트	발달(자폐·지적)
	작약재배, 메뚜기사육	발달(자폐·지적)
	바리스타	뇌병변, 지적
2016년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청각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정신
	지적장애인 바리스타	지적
	정신장애인 전통차 제조	정신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정신

연도	고용모델	장애 유형
2015년	정신장애인 원예분야	정신
	정신장애인 요리도우미	정신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정신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정신
	정신장애인 수공예용품 프로그램 강사	정신
2014년	친환경 웰빙푸드 생산 및 판매	정신
	웹접근성 평가사	시각
	동료상담가	정신
	노인 및 장애인 보조기구 세척·수리	발달(자폐·지적)
2013년	환경미화	지적,정신
	카페매니저(바리스타)	정신
	카페매니저(바리스타)	지적

연도	직무명	장애 유형
2022년	도서향균관리원	발달
	호텔웰컴패키지관리원	발달, 여성
	키오스크 파트너	발달
	의류 리포머	발달
	댐 드론 정비	중증
	아트 테라피스트	발달
	롤테이너 수리원	발달
	동물관리 지원사	발달, 장년
	동물원 운영보조	발달
	디지털역량교육강사	지적, 정신
	네일위생관리사	청각, 발달
	브랜드 이미지 크리에이팅	발달
	놀이공원 캐스트	발달
	여행 짐 관리원	중증
	콘텐츠 발굴요원	여성
	친환경제품 검수원	중증
	이커머스산업 직무패키지원	중증, 여성
의복관리원	중증	
2021년	이커머스 쇼핑파트너	중증, 장년, 여성
	의료서비스지원가	중증, 장년, 여성
	실험동물관리원	장년
	무장애여행 플래너	중증
	알기쉬운자료 감수원	발달
	향기디자이너	여성, 시각
2020년	원예교육보조교사	발달
	도보배달원	정신
	새싹재배사	발달, 중증
	이커머스쇼핑파트너	장년, 발달 등
	우리학교클린마스터	발달
	치과병원보조원	장년, 중증

연도	직무명	장애 유형
2019년	방진복 특수세정원	발달
	온라인 상품정보원	정신
	마음보듬이	시각
	도시양봉가	장년 및 정신
	테이블매니저	청각
	모바일게임 모니터링요원	장년
2018년	수제구두제작자	장년, 청각
	신재생에너지 지킴이	발달, 청각
	실버케어매니저	장년
	영화복원가	발달
	이러닝컨설턴트	여성
	자전거정비사	발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중증
	티마스터	발달, 여성
2017년	휠 마스터	발달
	잡 매니저	장년, 여성
	온라인 패커	발달
	데이터 매니저	발달
	IT 원격지원가	중증
	주거복지 도우미	중증
	검란, 주사액 패킹	청각, 발달
	음성전사직	전 유형
2016년	면세점 서비스원	중증, 여성
	바이럴 마케터	중증, 여성
	방송제작 지원가	여성, 중증
	상품정보 분석가	청각, 여성
	웹툰 작가	전 장애
	임상연구 사무원	중증, 여성
	편의점 스태프	발달
2015년	교사	전 장애
	렌터카 매니저	장년
	병원보조원	장년, 중증
	생활체육 보조코치	발달
	시니어 캐스트	장년
	조사 보조원	발달, 여성
2014년	동료지원가	정신
	디지털 환경지킴이	장년
	여행상품 개발자	전 장애
	웹 퍼블리셔	청각
	캐스트(테마파크)	발달
	IT 네트워크 전문가	청년(고학력)
2013년	게임산업	지적
	도시농부	발달
	도심공원 관리	지적, 정신

연도	직무명	장애 유형
2013년	동료지원가	정신
	디자인 아트	자폐
	호텔리어	발달, 시각
	IT 네트워크 전문가	청년(고학력)
2012년	네일아트	청각, 여성
	사무보조, 사서보조, 환경미화	발달
	제본, 복사, 배달	발달
	카페매니저	정신
2011년	금융고객상담, ATM기기 청소	청각, 뇌병변, 시각, 지체 등
	정부기관 사무보조	발달, 정신
	원격 컴퓨터 강사	지체
	교육청 사무보조 (커리어점프 희망일자리)	지적, 자폐성
	e-스포츠 심판	지체
2010년	의료기관 사무보조	지체, 시각, 청각 등
	정부기관 사무보조	지체, 뇌병변
2009년	교통리포터	지체, 신장
	도서관 업무보조, 사무보조	발달
	조립, 검사	청각, 지체
	헬스키퍼	시각
2008년	헬스키퍼	시각
2007년	공연 전시 가이드	시각
	농업분야(작물재배)	자폐성
	헬스키퍼	시각
2006년	헬스키퍼	시각
2005년	국가기록물 DB 구축	정신, 신장, 뇌병변, 청각
	도서관 사서보조	정신, 청각, 안면
	쇼핑컨설턴트	지체, 뇌병변, 신장, 시각
	스팀세차	지적
	전화 민원상담	지체
2004년	자동차 세차	지적
	인터넷 직업상담(재택)	뇌병변
	정부부문 사무보조	지체, 자폐성 등
2003년	금형모델링	지체, 뇌병변
	외식서비스 및 주유소 세차	지적
	웹콜마케터	지체
	컴퓨터 수리	정신
	PCB-ARTWORK	지체
2002년	간병사	지적
	텔레마케팅	정신
	환경 미화	지적
2001년	외식업 서비스	지적
	자료 입력원	신장
	컴퓨터 속기(1998년 첫 추진)	시각

※ 각 직무별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장애인 지원]-[장애인 직업영역개발]-[사업소개] 게시판에서 각 직무별 보고서를 참고하시거나 취업지원부(031-728-7177)로 문의 바랍니다.

제1조(목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_____ 기관 또는 기업(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간에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공단”과 “수행기관”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약정기간을 2023. 08.00. 부터 2023. 11. 30. 까지로 한다.

제3조(당사자의 의무) ① “공단”은 “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정」 및 위탁운영약정(사업계획서 포함)을 준수하여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공단”의 동 사업 수행을 위한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사업 참여로 취득한 참여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탁사업내용) ① “공단”이 “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계획 수립, 사업운영,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타 “공단”이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의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 사업계획에 따른 장애유형으로 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① “공단”은 이 사업에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_____천원을 지원한다.(“수행기관”이 신청한 사업비 중 “공단”과 합의·조정된 금액으로 함)

② 사업비는 “수행기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행기관”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지급한다.

제6조(인센티브 지급) ①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서 “공단”은 성과

측정 후 인센티브를 사업비의 최대 20%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신청 시 설정한 취업성과 목표의 100%를 달성한 경우는 총 사업비 지원금의 10%를 지급한다.
2. 사업 신청 시 설정한 취업성과 목표의 120%를 달성한 경우는 총 사업비 지원금의 20%를 지급한다.

제7조(사업비 사용 등) ①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사용함에 있어 동 사업 계획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예산 계정 전용 사용을 최대한 지양해야하며, 불가피한 경우 총 사업비 지원금의 2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 다만 회의비, 행사비 등의 업무활동비성 경비의 전용이 불가능하다.

제8조(사업비 관리) ①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변경) “수행기관”은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2023년 10월 16일 이전에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취소) “수행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은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 반환 및 환수) ① “수행기관”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와 공공재정환수법의 부정이익 가액을 포함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이 “공단”의 승인 없이 사업비를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공공재정환수법의 부정이익 가액을 포함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 및 배상책임) ① “수행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확산 사업 운영 중 서비스 지원 장애인, 사업 진행자 등을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및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공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③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공단”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행기관”은 이를 배상한다.

제13조(점검·평가) ① “공단”은 “수행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기관”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의무) “수행기관”은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결과 보고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결과 보고서 지원금에 대한 지출 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성과공유회의 참석) ① “수행기관”은 “공단”이 주최하는 성과공유회에 참석하여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

제16조(사업비 정산) “수행기관”의 사업종료 후에 정해진 기한 내 미집행된 사업비(정산방식에 따라 정산 후 금액)와 선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공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약정 해지 및 관련조치) ① “공단”은 “수행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탁약정’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이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약정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행기관”이 “공단”의 서면동의 없이 약정서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3. 참여대상자 모집광고가 허위 또는 부적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3차례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4. 위탁기관 지도점검 등을 통해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운영비’를 위탁사업 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약정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된 날까지 지출한 운영비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에 의한 부당사용액에 대한 환수조치는 제10조에 따라 별도 조치한다.

③ “수행기관”은 위탁약정이 해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위탁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참여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자의 개인정보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즉시 “공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계법령,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 효력은 약정일로부터 발효되며, 본 약정서 및 보안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 “수행기관”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인)

○○○○ 대표자 (인)